

[전문개정 2012. 12. 3.]

**제14조의2(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)** 영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(이하 "우수 물류신기술등"이라 한다)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.

[[본조신설 2019. 1. 11.](#)]

[[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7로 이동 <2019. 1. 11.>](#)]

**제14조의3(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)** 영 제46조의3제2항 및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심사비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[[본조신설 2019. 1. 11.](#)]

[[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8로 이동 <2019. 1. 11.>](#)]

**제14조의4(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)** ①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.

[[본조신설 2019. 1. 11.](#)]

**제14조의5(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)**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5서식과 같다.

[[본조신설 2019. 1. 11.](#)]

**제14조의6(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)**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그 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 또는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.

#### 1.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
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물류시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 증명서(물류시설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)
- 나.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
- 다.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(가목에 따른 발주자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)
- 라. 그 밖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

#### 2.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

- 가. 발주자가 발행하는 제품납품 증명서
- 나.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
- 다. 그 밖에 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

[[본조신설 2019. 1. 11.](#)]

**제14조의7(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)**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고, 평가항목별 배점의 2할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 <[개정 2021. 4. 20.](#)>

1. 물류시설, 운송수단 등에 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관리범위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
2. 물류분야 에너지, 온실가스 및 화물운송량 관리수준
3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실적